3. 장학제도

가. 교내 장학금

1) 교내 장학금 종류

- 가) 등록금 재원 장학금
 - 우수 장학금: 입학 및 재학중 성적 우수 장학금
 - 법정 장학금: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,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장학금
 - 복지 장학금: 아동복지 및 소년·소녀가정 청소년 장학금, 우수(저소득)장학금,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, 장애학생 장학금, 농.어촌전형 장학금
 - 특별 장학금: 체육특기자 장학금, 가족장학금(학부,대학원), 학·석사연계과정장학금(대학원)
 - 근로 장학금: 교육조교 장학금(대학원)
- 나) 발전기금재단 장학금: 용봉장학금, 대신장학금, 동원장학금, (지급대상)지정·미지정 장학금 100여종
- 다) 단과대학 장학금: 단과대학 자체지급 장학금
- 라) 특성화사업단 장학금: 특성화사업단 장학 4종

2) 생활지원형 장학금 종류

- 가) 열정장학금: 학교 기관에서 봉사하는 학부 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기관(부서)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
- 나) 도전장학금: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이며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선발
- 다) 미래성장장학금: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장학금 활용 계획서 및 실행 보고서 제출자 중 선발
- 라) 취업더하기장학금: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.75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취업계획서 제출자 중 선발 (단, 3~4학년 재학생)
- 마) 수능성적우수장학금: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모집 단위별 우수학생을 최초 합격자로 선발

나. 교외 장학금

1) 정부산하기관 장학금

- 가) 한국장학재단: 국가장학금(I, IR 유형)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, 인문100년장학), 푸른 등대장학금, 희망사다리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
- 나)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: 후계인력(영농, 브레인)장학금, 농어업인자녀장학금

2) 장학재단

- 광주은행장학금, 정수장학회, 미래에셋장학금, 동창장학회장학금, 미래국제재단 등 80 여종

다. 학자금 융자

1) 한국장학재단 정부보증학자금 대출

가) 대출자격 요건

대출상품	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)	일반 학자금	
대상자	·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, 복학예정인 대학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		
성적	·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·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"입학허가" -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		
이수학점	·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(신입생군, 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)		
연령	·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	·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	
환산 소득분위	·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(기초생활 수급권자 포함) -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 충족 시 일반학 자금 신청가능 *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	· 학부생: 가구소득 5분위 이상 · 대학원생: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	

나) 대출범위

- 든든학자금(취업후): 등록금+생활비(학기당 150만원)

- 일반학자금: 등록금+생활비(학기당 150만원)

다) 신청시기

구 분	등록금대출	생활비대출, 전환대출
1학기	1월 ~ 4월중	1월 ~ 5월중
2학기	7월 ~ 10월중	7월 ~ 11월중

라) 대출금리

- 대출 금리는 매학기 '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'를 통해 심의 후 결정

- 든든학자금: 변동금리 - 일반학자금: 고정금리

2)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

가) 신청자격 요건

-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/100점 이상
- 나) 대출범위: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 등) 전액
- 다) 융자조건: 무이자
- 라) 신청시기: 방학 중(1~2월, 6~7월)
- 마) 융자금 상환: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 원칙(졸업 또는 수료 후 부여되는 거치기간은 최대 2년 적용)